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12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문금주 · 윤준병 · 문대림
이원택 · 어기구 · 서삼석
임미애 · 이병진 · 송옥주
주철현 · 임호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등).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축(改築)·변경 또는 이전 등을”을 “개축(改築)·변경, 이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경우

제24조 중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을 “제1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제18조제1항에 따른”을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이나 물건의 <u>개축(改築)</u>·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24조(벌칙)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의2(벌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제18조(감독) ① ----- ----- ----- ----- ----- -----<u>개축(改築)</u>·변경, 이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1. ~ 4. (현행과 같음) 5.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벌칙) 제1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 제24조의2(벌칙)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경우로서</u> ----- ----- -----.
-----------------------	--------------------------------------